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61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 확대·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새마을장학금 목적 정비(안 제1조)
- 나. 장학금의 종류 정비(안 제2조)
- 다. 장학금의 지급대상 정비(안 제3조제1항)
- 라. 장학금액 정비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안 제7조)
- 마.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안 제9조제1항)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를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하“장학금””를 “이하 “장학금””으로,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을 “유공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운동”으로, “남·녀 새마을지도자(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녀 새마을지도자(각 동에서 활동하면서 구)”로, “자. 이하 “ 지도자””를 “사람. 이하 “지도자””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전직 지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다”로 한다.

1. 유공 장학생 : 방역·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3. 특기 장학생 : 지도자의 자녀 중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지회장”을 “구 지회장”으로,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매학기 개시”를 “매 학기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순위”를 “높은 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을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공지도자”를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로 한다.

제6조의 제목“(장학생의 정원)”을“(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지역 지도자수의 7% 이내”를 “지도자수의 7퍼센트 범위”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장학금)”을 “(장학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 제목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지급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를 “구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급 및 정지)”를 “(지급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를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때”를 “것이 확인되었을 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지회장”을 “구 지회장”으로 한다.

- 1.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둘 때
-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 4.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5.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장학기금 확보)”를 “(장학금액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학금”을 “구청장은 장학금”으로, “항구적”을 “지속적”으로, “정규예산에 계산한다”를 “예산에 반영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u> <u>지급조례</u></p>	<p><u>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새마을 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손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u>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u></p>	<p>제2조(종류) ----- ---이하 "장학금"----- - <u>유공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u>----- -----.</p>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u>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u></p>	<p>제3조(지급대상) ① ----- ----- <u>새마을운동</u>----- ----- <u>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녀 새마을지도자(각 동에서 활동하면서 구 ----- 사람. 이하 "지도자"-----</u> ----- 사람을 ----- . <u>다만, 구 청장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전직 지도자를 포함할 수</u></p>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동작구협의회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동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동작구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

있다.

1. 유공 장학생 : 방역·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삭 제>

3. 특기 장학생 : 지도자의 자녀 중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
-----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한다.

제5조(선정)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의 유공지도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지역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선정) ① 구 지회장-----
----- 다음 -----
----- 서울
특별시 동작구청장-----
----- 매 학기
시작 -----.

1. ----- 높은 등급-----

2. -----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
3.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
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제6조(정원) ----- 지도
자수의 7퍼센트 범위-----
----- 범위-----
-----.

제7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대학
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
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
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
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
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
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
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
분을 받았을 때

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급시기) -----
----- 구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
기 시작 -----
----- . -----
----- .

제9조(지급정지) ① -----
-----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둘 때

<삭 제>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
지 신청이 있을 때
4.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신 설>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신 설>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산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6. -----
--- 것이 확인되었을 때

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② 구 지회장-----

-----.

<삭 제>

제11조(장학금액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 지속적----- 예산에 반영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